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6. 29(수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6. 29(수) 14:00	담당부서	관세정책국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
담당과장	장정진 (2150-4490)	담당자	조용래 사무관 (2150-4491)

제목 : 7월 1일부터 한-EU FTA 특혜관세 적용 **(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· 시행규칙안 공포)**

- 한-EU 자유무역협정이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됨에 따라 독일 · 영국 · 프랑스 등 27개 유럽연합회원국 교역물품은 동 협정에 따라 **FTA 특혜관세**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
- 기획재정부는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율표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담은 **FTA관세특례법 시행령**(6.28일 국무회의 통과) 및 시행규칙을 개정 · 공포(6.30일)하였으며, 이에 따라 EU產 물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

EU產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 주요 내용

- (대상품목) EU產 자동차부품(8%) · 직물제의류(8~13%) · 냉장고(8%) 등 9,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
- 중·대형(1,500CC 초과) 승용차(8%) · 의약품(6.5%) · 화장품(8%) 등 625개 품목은 2~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고,
- 소형(1,500CC 이하) 승용차(8%) · 기초화장품(8%) · 합성고무(8%)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'16.7.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됨
- 또한, 홍차 · 커피(생두) · 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, 돼지고기(삼겹살 등) · 맥주 등도 2~10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될 예정

- (가격인하 효과)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 관세(8%) 철폐로 약 8.8~9.9% 수준으로 전체적인 세율이 인하되고, 高관세품목인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

※ 주요 EU수입품목의 세율인하 및 가격인하 효과

품 목	관세인하	세율인하*	가격인하(추정**)	감축기간
▪ 냉동 삼겹살	25 %	25.0 %	971원/kg	10년
▪ 와인	15 %	21.9 %	2,554원/ℓ	즉시
▪ 자동차	8 %	9.9 %	4백만원/대***	3~5년

* 관세 外 주세·교육세·개별소비세·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 세율 인하효과

** 실제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마진율, 가격정책 등에 따라 차이 가능

*** 약 4천만원 상당(수입가격기준)의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

- 이밖에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·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한·EU 수출입물품(HS 6단위 기준, 5,052개)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

- 국내산 수출물품 또는 EU産 수입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*을 충족해야 함

-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·전자·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-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민감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

* (완전생산기준) 모든 재료 및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·수행된 경우 원산지 인정
(세번변경기준)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인정
(부가가치기준)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인정

②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

-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·돼지고기 등 9개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이는, 기준 충족시 자동적으로 부과되어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※ [대상품목, 9개] 쇠고기, 돼지고기, 사과, 맥주맥·맥아, 감자전분, 인삼, 설탕, 주정, 덱스트린

- * (예) EU산 쇠고기의 경우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9,900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37.5%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40%가 자동적으로 부과됨

③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 완화

- 6,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'인증수출자' 자격을 갖추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,
- 금번 시행규칙에서는 '인증수출자'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,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
 - * 처벌이력(최근 2년 관세법령 위반자), 원산지 기관발급 반려사실(최근 2년간 5회이상) 요건 등 삭제

④ 기타 개정 사항

- 협정발효후 EU産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관세조치 내용(협정에서 정한 부과기간·적용 방법 등), 원산지 조사방법* 및 회신기간(10개월)을 규정하였고,
 - * 한-EU FTA에서는 양당사자간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방식의 조사방법 도입
- 또한,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제조 사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를 공급받은 최종물품 생산자가 부가가치 계산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 제품의 원산지 인정 요건을 확대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참고 1

주요 품목의 양허유형

□ 양측의 관세양허 현황

양허유형	한국 양허		EU 양허	
	품목수(개)	비 중(%)	품목수(개)	비 중(%)
즉시	9,195	81.7	9,252	94.0
2~3년	625	5.5	282	2.9
5년	718	6.4	269	2.7
6~7년	111	1.0	-	-
10년	399	3.5	-	-
10년 초과	169	1.5	-	-
양허제외/현행관세	44	0.4	39	0.4
총합계	11,261	100	9,842	100

* 품목수는 HS2006 기준

□ 주요 공산품의 관세인하 철폐시기

() 관세율, 단위 : %

철폐시기	한국 양허	EU 양허
즉시	자동차부품(8), 계측기(8), 직물제의류(8~13), 인쇄기계(8), 칼라TV(8), 냉장고(8), 선박(5), 타이어(8), 광학기계(8), 화학기계(8), 전구(8), 섬유기계(5~8), 컴퓨터 부품(8), 항공기부품(3~8), 계측기부품(8) 등	자동차부품(4.5), 스웨터(12), 편직물(8), 냉장고(1.9), 에어컨(2.7), 라디오(9~12), 스키부츠(8~17), 폴리에스테르 직물(8), 진공청소기(2.2), 아세탈수지(6.5), 남성셔츠(12), 연축전지(3.7), 리튬전지(4.7) 등
3년	중·대형(1,500cc 초과) 승용차(8), 기타정밀화학제품(5~8), 펌프(8), 선박용 엔진및그부품(8), 기기부품(8), 의약품(6.5), 화장품(8), 선박용부품(8), 안경(8) 등	중·대형(1,500cc 초과) 승용차(10), 베어링(8), 타이어(2.5~4.5), 합성수지(6.5), 고무벨트(6.5), 복사기(6), 전자레인지(5), 자전거(15) 등
5년	소형(1,500cc 이하) 승용차(8), 하이브리드카(8), 밸브(8), 베어링(8), 시멘트(8), 윤활유(7), 기초 화장품(8), 접착제(6.5), 합성고무(8), 제재목(5), 원동기(8) 등	소형(1,500cc 이하) 승용차(10), 하이브리드카(10), 칼라TV(14), TV카메라및수상기(14), 순모직물(8), 영상기록재생용기기(14), 화물자동차(22) 등
7년	순모직물(13), 수산화나트륨(8), 건설중장비(8), 인쇄기계(8), 금속절삭가공기계(8), 합판(8~12), 섬유판(8), 파티클보드(8), 밸브(8), 베어링(8), 의료용전자기기(8), X선및방사선기기(8), 합성고무(8) 등	없 음

□ 우리 주요 농산물의 양허유형

양허유형	품목수	주요품목
즉시	610	홍차, 커피(생두), 포도주, 코코넛, 원당, 아몬드, 파스타, 화훼류 등
2년	3	레몬, 자두, 아보카도
3년	14	밀가루, 마가린, 오렌지주스(냉동), 스카치 위스키 등
5년	278	데킬라, 보드카, 브랜디, 초코렛, 사탕, 비스킷, 인스턴트 커피, 소시지, 바나나, 그레이프프루트, 콩 등
6년	3	호두(탈각)
7년	45	과일주스(레몬 등), 잼, 맥주, 밀, 무화과, 아이스크림 등
10년	275	돼지고기(삼겹살 등), 혼합분유, 앞담배, 들깨, 복숭아, 망고, 파인애플, 매실, 과일주스(딸기, 복숭아 등), 메주, 춘장, 레몬, 로얄제리 등
예외적 취급*	205	감귤, 고추, 마늘, 양파, 감자, 고구마, 인삼류, 참기름, 참깨, 전탈지분유, 천연꿀, 오렌지, 포도, 치즈, 사과(후지), 배(동양배), 쇠고기 등
양허제외	16	쌀
합계	1,449	

* 예외적 취급 : 현행관세유지, 계절관세, 수입쿼터, 10년초과 장기철폐 품목

□ EU측 주요 농산물의 양허유형

양허 유형	품목수	주요 품목
즉시	1,895	면류, 돼지고기, 닭고기, 아이스크림, 맥주, 인조꿀, 녹차, 화훼류, 비스킷, 음료 등
3년	10	꽃양배추, 샐러리, 완두, 콩 등
5년	104	쇠고기, 마늘, 고추류, 천연꿀, 덱스트린, 오렌지, 감귤, 등
시장진입가격*	16	토마토, 호박, 감귤, 복숭아 등
양허제외	39	쌀
합계	2,064	

*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

참고 2

주요 공산품 및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

□ 주요 공산품 원산지 결정기준

품 목	원산지 기준
자동차	- 완성차: 역외산 부품비율 45% 이하 - 자동차 부품: 역외산 부품비율 50%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(CTH) - 모터사이클,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%에 합의 ·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,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%를 적용
기계 전기전자	- 세번변경기준(CTH)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-50%중 선택
의 류	- 직물기준 - 단, 섬유사 및 직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 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
화학제품	-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(CTH) 적용
비철금속	-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(CTH) 적용
신 발	- 역외산 갑피(upper)와 안창 사용(inner sole)이 인정되나,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. - 다만,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%이하 기준 적용가능

□ 주요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

대상품목	원산지 기준
쌀·녹차·인삼·참기름 및 관련 제품	역내산 (완전생산기준)사용
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	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(완전생산기준)
수 산 물	역내에서 어획된 것(완전생산기준)
담 배	역외산 재료는 30%까지 허용하되,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확보